



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153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4
나.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5
2. 주요 조문별 검토	9
가. 총칙 (안 제1장)	9
나. 반도체산업 지원·육성 체계의 구축(안 제2장)	12
다. 반도체산업 지원 기반의 조성 (안 제3장)	18
라.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안 제4장)	22
마. 반도체산업의 인력양성 지원 (안 제5장)	33
바. 반도체산업에 대한 특례 (안 제6장)	36
사. 보칙 및 부칙 (안 제7장 및 부칙)	48
※ 참고자료	5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구자근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12. 3.
3. 회 부 일 : 2024.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 분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을 견인하는 필수 동력이며,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전체 수출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무역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하는 등 주력 첨단산업으로 자리하였으나, 2019년 이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반도체 분야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자국 반도체에 대한 강력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정책은 세액공제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향후 국내 반도체산업 위축이 우려됨.

이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국내 반도체산업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 나.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 다.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 라. 정부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국가수도기본계획 등에 각각 반영하여야 함(안 제15조).
- 마.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하여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발전 등 공급망 안정화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바.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하여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지정하도록 함(안 제19조).

사.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국가·경제안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신속한 미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8조).

아.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할 때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허가·결정·인가·면허·협약·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등의 의제를 도입함(안 제31조).

자.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에 서면합의하면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33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동 제정안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특별회계의 설치, 보조금 지원 및 인재육성 등 반도체산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국가·경제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의 특별법안임.

제정안은 총칙, 반도체산업 지원·육성 체계의 구축, 반도체산업 지원 기반의 조성,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반도체산업의 인력양성 지원, 반도체산업에 대한 특례, 보칙 등 총 7개의 장, 본문 40개,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실행계획 수립, 특별회계 설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 지원,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관 지원,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근로시간 등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나.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제정안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법 제정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먼저,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임.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은 11년 연속 수출 1위, 국내 수출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메모리반도체 외에 팹리스¹⁾, 시스템반도체²⁾, 파운드리³⁾ 등의 분야에서는 여전히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으로서, 이들 분야에 대한 기술적·산업적 역량과 시장점유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⁴⁾.

또한, 인공지능, 미래자동차, 로봇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하여 반도체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반도체를 무기화하여 국가간 안보와 연계된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함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도권이 갈수록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미국, 일본, 대만, EU, 중국, 인도 등 세계 각국은 반도체산업과 관련

1) 팹리스(fabless)는 제조 설비(fabrication facility)가 없다(less)는 뜻으로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설계 및 기술 개발만 하는 산업분야를 의미함.

2) 다양한 기능을 집약한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만든 반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반도체와 대비됨.

3) 파운드리(foundry)는 반도체의 제조를 위탁받아 생산을 전문하는 산업분야를 의미함.

4) [참고자료 1] 반도체 산업규모 및 우리나라 시장점유율 참조

한 투자와 지원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고⁵⁾ 전방위적 전략을 시행하고 있는 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고있는 반도체산업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비메모리 분야의 산업 역량을 확대하는 등 반도체산업에서 뒤처지지 않고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중·소 기업 및 정부가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력·용수 등 산업인프라 공급, 인재육성, 보조금 지급 등 국가적 지원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제정안은 이러한 취지에서 반도체산업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근거를 반영한 것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각국의 경쟁적 지원은 반도체의 과잉공급과 가격하락 가능성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므로⁶⁾, 대규모 자본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 과정 속에서 우려되는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

5) [참고자료 2]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지원 현황 참조

6)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CHIPS 보조금정책의 역설, 경쟁적 반도체산업 지원이 촉발할 국가 간 견제에 대한 대응역량 조기 확보 필요」, 과학기술정책브리프 vol.25(2024.4.9.)

다음으로,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기존의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법체계와의 차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정 '22. 2. 3., 시행 '22. 8. 4.)은 '22년 미국과 중국의 첨단산업 패권경쟁 속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관점에서 첨단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4개 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분야로서, 제정 당시 동법은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릴 만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이 주된 제정 목적이었고, 용인·평택 지역에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클러스터”(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을 조성·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특별조치법임.

동 법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설치,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5년 단위) 및 실행계획(매년) 수립, 현황조사 및 관련 통계의 작성,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조성·운영 지원, 신속 인허가 패스트 트랙,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인재양성, 국제협력 등 제정안에

서 반영하려 하는 사항들을 이미 다수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제정안은 지원 대상을 반도체산업에 집중하고,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가·지자체의 산업기반시설 직접 설치 및 비용 부담 강화, 생산시설 구축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특별회계 설치,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 근로시간 완화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차별화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검토함에 있어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의 공통점 및 차별점 등을 검토하고, 새롭게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보완·개정하는 방안 중 어떠한 방안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법률 체계 및 행정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적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총칙 (안 제1장)

제 정 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광개별소자 등) 등을 설계, 제조, 공급 등 사업화하는 산업 나. 외부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설계자산을 위탁받아 제조·공급하는 산업 다. 가목 및 나목의 산업에 필요한 설계·설계자산·소프트웨어·소재·부품·장비·패키징 등 공급망 생태계에 해당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산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산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등을 하는 산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관련 시설을 제조·건설하는 산업 2. “반도체클러스터”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연구·판매·지원 등이 촉진 되도록 관련 기관과 시설들이 모인 다음 각 목의 단지 중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입지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다.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 정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이 국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인식하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규제 완화 등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반도체산업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법률의 제명은 알기 쉽고 간결하여야 하며, 법률의 주요 규정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또한, 동법은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발전법」,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계의 수요에 맞게 우수인재를 지속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첨단산업 인재 혁신 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대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1조(목적)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생태계 조성, 국가·경제안보, 국민경제 발전 등이 골고루 반영되고 있으며, 법률

의 제명 및 법안의 전반적인 내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 제2조(정의)는 반도체산업, 반도체사업자, 반도체클러스터, , 반도체산업기반시설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동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으로, 법률에서 활용되는 용어 등의 뜻을 명확히 하여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고,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미리 하나의 조문에서 설명하여 줌으로써 법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등의 기능을 함.

한편, 제3조(국가 등의 책무)는 법률에서 국가와 지자체 등의 책무를 기술하면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법률간 적용의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과 관련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에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나. 반도체산업 지원·육성 체계의 구축(안 제2장)

제 정 안
제2장 반도체산업 지원·육성 체계의 구축 제5조(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관계 부처 규제 일원화 및 인허가 의제 확대 등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의 설계,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특례 제공 및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6.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운영·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의제 사항 8.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인허가 의제 사항 9.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10.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산업 지원 특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재정·행정지원 등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업계·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 정 안

-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 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 및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반도체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된다.

- ⑥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사업자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조정위원회의 및 소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기본방향
2.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제 정 안

6.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7.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반도체산업의 시설투자 또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사항
8. 반도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
9.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위원회에 전년도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 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연구소 등 소속의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반도체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정부는 매년 반도체산업 등에 관한 경제적·산업적·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제 정 안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로벌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2.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성능검증 및 실증센터 구축사업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 반도체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제정안 제2장(반도체산업 지원·육성 체계의 구축)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 설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등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두려는 것으로,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와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작동할 수 있

도록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안이 타당해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와 현행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기능상 유사·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의 간사위원(장관급),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차관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사위원으로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과 관련해서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기본방향,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등 12개 호로 규정하고 있음.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주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범부처 협력을 필요로 하

7)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의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간사위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간사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는 과업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위원회의 운영 지원,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특별회계 설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원 조직임. 동 조직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의무규정으로 인식되는 경우 향후 반도체산업 정책이 충분한 기틀을 잡아 조직 운영의 필요성이 낮아지는 때에도 영속적으로 존립하게 될 수 있으므로 “둘 수 있다” 등 재량조항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과 관련해서는,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관련 통계, 현황조사, 발전전망 예측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현황 조사, 미래전망 예측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사·예측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전문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경우 통계 작성·관리, 조사·예측 등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다. 반도체산업 지원 기반의 조성 (안 제3장)

제 정 안

제3장 반도체산업 지원 기반의 조성

제11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①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 회계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차입금 상환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반도체산업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재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예산의 이월 등)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③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14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 정 안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5조(반도체산업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전력망·용수망·도로망의 설치·확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국가수도기본계획, 국토·국지도 건설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반도체 위탁생산 산업발전 등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하여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발전 등 공급망 안정화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내용과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정부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2. 연구개발 또는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4.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에 대한 지원
5.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
6.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7. 해외특허출원 등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지도 및 자문

제 정 안
8.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제18조(국제협력 등의 지원)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국제적인 연대 형성을 통하여 반도체산업을 위한 통상협력,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문인력 교류, 국제 공동 연구 수행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3장(반도체산업 지원 기반의 조성)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반도체산업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발전 등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국제협력 등의 지원 등 반도체산업 기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11조~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특별회계로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예산의 이월, 회계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국가재정법」 제14조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과 관련하여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도체산업 지원, 특히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생산시설 등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그 밖에 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국제협력 사업 등의 용도에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는 반면, 특별회계의 재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원 확보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는 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련해서, 반도체와 관련한 인력양성, 인프라 지원,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 사업이 일반회계 및 여러 회계·기금을 통해 이미 지원되고 있고, 대부분의 재원을 정부출연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재원 확보가 불확실하는 등 「국가재정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및 특별회계 신설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안 제16조(반도체 위탁생산 산업발전 등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지원)와 관련하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 발전 등의 시책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망 안정화”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공급망 안정화 시책”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임.

라.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안 제4장)

제 정 안
제4장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제19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연구·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제2호나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2조제2호가목의 지역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조성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따라야 한다. ④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재정 지원 및 특례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

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급망 안정화”란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를 저해하는 위협요인의 예방·대비·대응을 포함하여 공급망의 탄력적 회복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 정 안

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

1. 전력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폐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반도체클러스터에 연결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5.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련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시행자의 투자·운영 등 관련 일정 및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관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관의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운영, 반도체산업에 관련된 설비 및 연구시설 투자, 산업기반시설 투자, 연구개발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①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의 혁신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과 주택·의료시설·교육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4. 반도체클러스터의 체계적 개발 및 운영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제 정 안
5.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재정적 특례를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4장(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은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 지원,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관 지원, 반도체클러스터 육성 시책,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안 제19조)

반도체클러스터는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연구·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함.

제정안은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요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반도체클러스터가 지정되어 효과적으로 정착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주체의 구체적인 육성

계획과 추진의지, 재원조달 방안 등과 함께, 전력·용수·인력 등 반도체산업의 필수 요소 확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지정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19조제2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의 특화단지와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하므로, 반도체클러스터를 신규 지정하기 보다는 운영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일관되고 내실있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은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닌 정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 지원(안 제20조)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이 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전력·용수 공급 시설, 폐수 처리 시설 등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할 수 있음.

산업기반시설은 전력, 용수, 도로 등 생산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현재 첨단전략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23년부터 특화단지별로 전력, 용수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⁹⁾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대 수 조원에 달하는 기업 부담에 비하여 정부의 지원 규모가 작아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제정안은 이러한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의무 설치 및 비용지원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국가·지자체의 공공재 지원 의무 및 사업자 등 원인자(수요자)의 책임 범위, 반도체산업 지원을 통한 국가 안보·경제 효과,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지원범위 및 지원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부칙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이전에 설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생산시설, 산업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반도체와 관련하여 지원 대상이 되는 생산시설이나 산업기반시설의 범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참고자료3] 반도체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 계획 참조

한편, '24. 8월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제정하여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지원 및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다량의 용수 확보 및 공급은 대규모 시설공사를 수반하므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나 의무지원이 아닌 완화된 재량지원 형태로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고, 지원 대상 용수공급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기획재정부는 전력, 용수, 폐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은 원인자비용부담 원칙과 함께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가와 지자체가 내용에 따라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0)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은 전력·용수·폐수·도로·처리수 지하관로 등 5개 분야를 지원대상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예산 교부 당해연도 공사 착공 가능 시설에 단년도 지원하고, 기반시설의 직접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하며, 특화단지 투자규모 및 지역을 고려하여 총 사업비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는 내용임. 단, 동 지원기준은 '23년 등 지원이 완료된 산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비율 >

구 분	기업 투자 규모별			비수도권	수도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上 구간	100조원 이상	30조원 이상	10조원 이상	30%	25%
中 구간	10~100조원	3~30조원	1~10조원	25%	20%
下 구간	10조원 미만	3조원 미만	1조원 미만	20%	15%

용인시는 반도체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력, 용수, 폐수 등의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직접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지자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관 지원(안 제21조)

안 제21조는 입주기관에 대하여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운영, 반도체산업 관련 설비 및 연구시설 투자, 산업기반시설 투자, 연구개발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조항은 반도체클러스터 내 설비 및 연구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직접 보조금의 근거 규정으로서, 직접 보조금은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 기업에 대하여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행위이므로 반도체산업 육성이라는 제정안의 목적과 함께 다른 정책수단의 선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근거 마련 시 의사결정 주체와 대상, 요건,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미국·일본·EU 등은 자국 내에 투자하는 자국 또는 외국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미국은 750억 달

러의 대출, 25%의 투자세액공제와 함께 39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설비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5G 촉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2조엔 이상의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¹¹⁾.

[표 3] 세계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자지원(인센티브) 현황

구분		미국	대만	EU	일본	우리나라
생산시설 보조금		\$390억 (약 53조원)	-	€430억 (약 64조원)	¥2조 (약 17조원)	-
세액 공제	시설	25%	5%	-	-	15~25%
	R&D	-	25%	-	6~12%	30~50%
기간		~'26년	~'29년	~'30년	-	~'24년

* 출처 : 대한상의('24.6월)

대한상의에 따르면, 경쟁국들은 생산시설 구축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생산시설 자본투자의 30% 가량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약 10%의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¹²⁾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직접 비용지원이 없는 우리나라 반도체기업은 원가경쟁력에서 열세인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임.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직접 지원은 인공지능, 미래자동차,

11) 단, 미국은 최근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법(Chips Act) 등에 의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 등을 재검토·변경하거나 집행 연기, 관세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12)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및 대한상공회의소, 「반도체 공급역량 및 원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2024.6.)

로봇 등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국가 간 패권 경쟁이 이루어지는 현시점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서, 다른 지원 정책과 함께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정책 옵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기술개발과 자본투자 경쟁에서 현금의 확보가 기업의 존립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원하는 경우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1기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Fab)을 구축하는데 약 20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액 단위상 직접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예상되는 측면이 있는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기업투자 촉진 측면과 함께 산업기반시설 지원 및 연구개발 지원 등 다른 지원 정책과의 조화, 반도체 산업과 연관된 전후방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전반에 미치는 거시적인 경제 효과, 재정 및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미국·일본 등은 신규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보조금 지원 중심인 반면 제조기반이 있는 한국·대만은 세제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각국 상황에 맞는 정책 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관계부처 합동, '24. 6. 26.)¹³⁾을 마련하여 우리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 중이므로 제정안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동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안 제22조)

제정안은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과 관련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 산업기반시설 구축, 입주 기업의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반도체클러스터의 체계적 개발 및 운영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과 함께, 주택·의료시설·교육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지원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수립·시행되도록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13) [참고자료4]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4. 6)의 주요내용 참조

의결 대상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수립주체가 “정부”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간의 협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허청은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지식재산권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8조¹⁴⁾와 마찬가지로 반도체특구등의 육성시책에 연구·개발 성과의 지식재산권 출원·관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4)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8조(특화단지육성시책) ② 특화단지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생략)

4. 특화단지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지식재산권 출원·관리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마. 반도체산업의 인력양성 지원 (안 제5장)

제 정 안
제5장 반도체산업의 인력양성 지원 제24조(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 제조 등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반도체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 인력의 연구개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4. 신규 인력 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유지 및 안정에 관한 사항 5. 퇴직근로자 등 반도체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6. 반도체 공정을 위한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7.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5조(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반도체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① 정부는 우수한 반도체 교육환경 조성 및 인력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특성화대학원, 반도체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반도체특성화대학 등” 이라고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

제 정 안

- 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특성화대학등의 운영과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반도체산업별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 중 반도체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5장(반도체산업의 인력양성 지원)은 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반도체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전문인력양성,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교육공무원 등에 관한 휴직 등 특례,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2024년 1월 제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산업계 인재육성과 관련한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재육성을 위한 제도 및 사업은 현행 법령을 통해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반도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은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주체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정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바. 반도체산업에 대한 특례 (안 제6장)

제 정 안
제6장 반도체산업에 대한 특례 제27조(세제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각종 세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경제안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신속한 미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2. 제20조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조성 3. 제21조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입주기관 지원 4.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상,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

제 정 안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2.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3. 제20조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협업하여 개발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2. 국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의 지정·운영
3. 국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핵심적 필요인력에 대한 국가 핵심인재 지정 및 지원
4. 국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인력 유치를 위한 반도체클러스터 내 소재·부품·장비 첨단 연구개발단지, 시스템반도체융합 연구개발단지 등의 조성, 부지 할당,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료 감면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제3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할 때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결정·인가·면허·협약·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가 되는 사항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인가·허가 등이 의제가 되는 사항
3.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2조(반도체산업 기술 수출 승인 및 신고 등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국가핵심기술 수출의 승인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제33조(근로시간 등에 대한 특례) ①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근로 기준 적용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고용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고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정 안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병역지정업체 선정 등에 대한 특례)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병역지정 시설 등의 종사자에 대하여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6장(반도체산업에 대한 특례)는 세제지원에 관한 특례,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대한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반도체산업 기술 수출 승인 및 신고 등의 지원, 근로시간 등에 대한 특례, 고용에 대한 지원,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세제지원에 관한 특례(안 제27조)

세제지원에 관한 특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각종 세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으면 실제 세제지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조세 및 지방세 특례규정 신설 등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등에 따라 세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항이므로, 조세 및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안 제28·29조)

안 제28조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대상사업의 우선선정을, 안 제29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경우 특화단지 지원 사업 및 기술개발 사업 등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등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되, 이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반

도체산업과 관련한 사업에 유사하거나 조금 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국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써 국가 재정법 체계에서 일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관련 불특정 사업에 대한 포괄적·항구적인 예타 우선 선정, 유사사례 등으로의 법제화 파급 가능성 등을 고려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대한 특례 (안 제30조)

안 제30조는 정부가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테스트베드의 지정·운영, 핵심인재 지정 및 지원, 첨단 연구개발단지 등의 조성, 부지 할당,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동 사항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현행법 체계 내에 의해서도 대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성에 맞게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사항은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허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특례를 추가할 실익이 낮아 보이며,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대하여 정부(국가)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임.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안 제31조)

안 제31조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또는 산업기반시설 조성 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각 호에 따른 허가·결정·인가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규정하는 인·허가 등의 의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9조는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정안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인·허가를 의제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인·허가 의제는 산업기반시설 설치와 반도체 특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 과정에서 신속한 행정 절차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규제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각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실체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행정기본법」 제2절(제24~26조)에서는 인허가의제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일반법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은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과 같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인·허가 등을 위한 협의 근거가 필요하며, 인·허가 등의 의제 대상에서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환경부는 인·허가 사항은 실체적 요건이 검토되어야 하므로 소관 부처와 협의 없이 승인하는 방식의 인·허가 의제 조항인 경우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반도체산업 기술 수출 승인 및 신고 등의 지원 (안 제32조)

안 제32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국가핵심기술 수출의 승인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핵심기술 수출의 승인·신고와 관련하여 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업의 편의 개선 필요성과 함께,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와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 조화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근로시간 등에 대한 특례 (안 제33조)

안 제33조는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안 부칙에서는 동 특례의 유효기간을 203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고,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운영상 애로해소를 위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를 비롯한 신제품 개발과 연구개발 등 업무에 장기간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여러 근로유연화 제도로는 활용도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미국과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 경영에 관한 업무와 권한, 일정 수 이상의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경영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일명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와 일본에서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석가, 프로그래머, 컨설턴트 등 고연봉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한도 및 시간외수당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비롯하여, 근로시간의 확대 또는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연구개발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 중 일정 소득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은 현재 국내에 관련 입법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일정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음¹⁵⁾¹⁶⁾.

제정안에 따라 반도체산업 관련 고소득 연구개발 업무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 없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집중적인 근무형태로 성과 중심의 근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제가 우리

15) 의안번호 22052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6) 제20·21대 국회에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 폐기된 사례도 있음.

의안번호 20228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0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나라보다 강하지 않은 국가에 속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원활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과 함께,

근로자의 건강, 휴식권 확보 등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체계의 예외가 발생하여 갈등이 유발되거나 다른 산업분야에 확대 적용 요구가 커지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고용에 대한 지원, 해외 우수인력 발굴·유치,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의 특례 (안 제34~36조)

안 제34조에 따른 고용에 대한 지원은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고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며,

안 제35조에 따른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는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 실시,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별도 설정 등에 관한 사항임.

안 제36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에 관한 특례는 반도체산업 관련 병역지정 시설 등의 종사자에 대하여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등의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¹⁷⁾,

반도체 산업은 2031년까지 15만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수한 인재를 병역특례 제도를 통하여 육성하는 경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수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현행 「병역법」 제3조¹⁸⁾는 이 법에 따르지 않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을 통해 특례조항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점차 감소하는 병역자원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병무청은 병역의무와 관련된 제도는 병역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3조제2항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및 배정인원 결정 시 우대하고 있는 점¹⁹⁾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7) 병무청의 「25년 병역지정업체, 반도체·소부장 등 중점 육성 산업 우선배정」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 2,300명, 산업기능요원 3,200명, 승선 요원 1,000명 등 총 6,500명의 인원중 반도체 분야 전문연구요원 100명, 반도체·저탄소·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산업기능요원 300명을 배정할 계획임

18)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19) 병역법 시행령 제73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및 제77조(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사. 보칙 및 부칙 (안 제7장 및 부칙)

제 정 안
제7장 보칙 등 제37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도체클러스터 관리기관 및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관리기관 및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40조(과태료) ①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입·검사 등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6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지원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이전에 설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생산시설, 산업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유효기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근로시간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 제33조는 2035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안 제7장(보칙 등)은 자료 제출 및 검사,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적극 행정 면책 특례, 과태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반도체클러스터의 관리 등을 위한 행정 감독, 사무의 위임·위탁, 적극 행정의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보임.

한편 부칙에서는 시행일, 적용례, 특별회계 및 근로시간 특례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시행일은 동 제도 준비에 필요한 기간 확보 차원에서 대통령령 등 위임 규정의 제정 등을 위해 6개월 가량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적용례 및 특별회계·근로시간 특례의

유효기간 등에 관해서는 해당 규정 논의 시 제도의 정합성과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논의 시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0

참고 1

반도체 산업 규모 및 우리나라 시장점유율

(출처 : OMDIA)

□ 글로벌 산업 규모

(단위: 억불)

구 분	'17	'18	'19	'20	'21	'22	'23
반도체 전체	4,315	4,846	4,286	4,756	5,944	5,977	5,448
메모리반도체	1,319	1,646	1,125	1,281	1,685	1,443	946
DRAM	735	989	622	663	941	793	512
NAND	540	610	460	572	685	594	387
시스템반도체	2,309	2,469	2,417	2,707	3,359	3,616	3,614
광개별소자	686	731	743	767	899	917	888

□ 우리나라 반도체 품목별 시장점유율

(단위: 억불)

구 분	지 역	'17	'18	'19	'20	'21	'22	'23
반도체 Total	세 계	4,315	4,846	4,286	4,756	5,944	5,977	5,448
	한 국	923	1,146	790	871	1,166	1,054	717
	(%)	21.4%	23.7%	18.4%	18.3%	19.6%	17.6%	13.2%
메모리반도체	세 계	1,319	1,646	1,125	1,281	1,685	1,443	946
	한 국	801	1,016	657	730	995	872	577
	(%)	60.7%	61.7%	58.4%	56.9%	59.1%	60.4%	61.0%
	DRAM	735	989	622	663	941	793	512
	한 국	531	716	445	472	671	559	376
	(%)	72.3%	72.4%	71.6%	71.1%	71.3%	70.6%	73.5%
NAND	세 계	540	610	460	572	685	594	387
	한 국	269	299	211	257	324	313	201
	(%)	49.9%	49.0%	45.9%	45.0%	47.2%	52.6%	52.0%
시스템반도체	세 계	2,309	2,469	2,417	2,707	3,359	3,616	3,614
	한 국	69	76	78	78	100	115	84
	(%)	3.0%	3.1%	3.2%	2.9%	3.0%	3.2%	2.3%
광개별소자	세 계	686	731	743	767	899	917	888
	한 국	53	55	55	63	71	67	56
	(%)	7.7%	7.5%	7.4%	8.2%	7.9%	7.3%	6.3%

참고 2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 현황

- ① (미국) 「반도체 과학법」 제정 ('22.8월)을 통해 제조,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527억불(약 73조원) 규모 보조금·대출·보증 자원 마련
 - * 美 반도체 보조금 지원 사례 : BAE시스템스(英) 3,500만불('23.12), 마이크로칩(美) 1.6억불('24.1), 글로벌파운드리스(美) 15억불('24.2), 인텔(美) 200억불('24.3)
 - 「국세법(IRC)」을 개정 ('22.8월)하여 반도체 장비·제조시설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 혜택 제공
- ② (일본) '반도체 산업기반 긴급강화 패키지'('21.11)를 통해 1.7조엔* (약 15조원) 규모의 제조시설 보조금 자원 조성
 - * ('21) 6,170억엔, ('22) 4,500억엔, ('23) 6,322억엔
 - * 日 반도체 보조금 지원 사례 : TSMC 공장에 4,760억엔 지급 (약 4.4조원, '22), 마이크론(美)에 2,135억엔 (약 1.9조원, '23.10) 지급 결정 등
 - 반도체 등 5대 전략 분야*를 대상으로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 최대 20% 감면 발표 ('23.12)
 - * 반도체, 전기차, 그린철강, 그린케미컬,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 ③ (대만) 「산업혁신조례」 개정 ('23.1) 등을 통해 R&D 및 첨단 공정용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입지·인프라(전력·용수 등) 지원
 - R&D 투자액의 25%, 첨단 공정용 설비투자액의 5% 세액공제 적용 (법인세의 30% 한도, '24.7~'29.12)
- ④ (중국) 역대 최대 3,440억 위안(약 65조원) 규모 반도체 3차 빅펀드 조성 발표 ('24.5)
 - * 과거 사례 : 1차 펀드('14, 1,390억 위안), 2차 펀드('19, 2,040억 위안) 조성
 - 반도체 분야 첨단기술 보유 기업에 최대 10년까지 법인세 면제 및 집적회로 생산설비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등 세제 혜택 제공

<주요국 반도체산업 지원 근거법>

구분	지원 근거법	주요 내용
미국	반도체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	- 보조금(390억달러) 등 재정지원 527억달러, 세액공제 25% * 보조금 : 세부 지원기준 및 절차 (NOFO), 가이드라인 규정 * 세액공제 : 「반도체과학법」에서 국세법 section 48D 추가 규정 - 첨단반도체 R&D 지원 (110억달러)
EU	EU 반도체법 (EU Chips Act)	'30년까지 민관 반도체 투자 430억유로 이상 자금 조성 「반도체법」 요건 충족*시 「경쟁법」상 국가보조금 금지 예외 → 회원국이 보조금을 책정하면 EU 집행위가 심사·승인 * EU 내 최초인 제조시설, EU 반도체 공급망 공정 기여 등 - 기존 EU 예산을 전용하여 반도체 기술개발 등에 활용
일본	5G 촉진법 (정보통신기술법)	- 반도체 중소기업 채무보증, 반도체 관련 주식회사 신주 인수 - 반도체 관련 기구·비품·건물 부속 설비 및 구축물에 대한 과세특례
	NEDO법 (신에너지·기술 종합개발기구법)	- 반도체 제조설비 투자 보조금 * 경제안보기금 + 첨단반도체기금 + 포스트5G기금 = 1.7조엔
	경제안보촉진법	반도체 공급망 강화 지원,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
중국	집적회로산업 및 SW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배포 관련 국무원 통지	- 기술 수준 및 영업 기간에 따라 법인세 차등 면제 * 28nm↓ + 영업 15년↑ : 10년 면제 / 65nm↓ + 영업 15년↑ : 5년 면제 / 130nm↓ + 영업 10년↑ : 2년 면제 - 동 통지와 별도로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반도체 투자기금 조성 * (1기, '14년) 1,387억 위안, (2기, '19년) 2,041억 위안, (3기, '24년) 3,440억 위안
대만	산업혁신조례 제10조제2항	- R&D 투자세액공제 (25%) - 첨단 공정용 장비 투자세액공제 (25%)
	미래지향적인 혁신 연구개발 및 첨단 공정 장비 지출에 적용가능한 투자공제방법	- R&D 투자세액공제 (25%) 조건 * 당해연도 R&D 투자액 60억 대만달러 이상, 순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6% 이상, 유효세율 15% 이상 - 첨단 공정용 장비 투자세액공제 (25%) 조건 * R&D 세액공제 조건 + 당해연도 100억 대만달러 이상 장비 구입

참고 3

반도체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 계획

□ 반도체 첨단특화단지 투자 동향

- 삼성전자(용인 국가산단) : '28년 1호 팹 착공 예정('30년 완공)
- SK하이닉스(용인 일반산단) : 1호 팹 부지 조성 **40%** 완료된 상태, 투자 계획에 맞춰 '25.3월 1호 팹 착공 예정('27.5월 완공)

□ 반도체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 계획

- 전력 : 용인 국가·일반산단 내 팹 준공 시기에 맞춰 '**53년까지 10GW** 이상 필요 → 신안성변전소를 통한 **2.8GW** 既 확보
 - 용인 국가산단 : '30년부터 산단 내 **LNG** 발전소로 **3GW** 공급, '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6GW** 이상 공급
 - 용인 일반산단 : 한전-SK하이닉스 협약으로 **2.8GW** 既 확보('21.12월), '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3GW** 이상 공급
- 용수 : 용인 국가·일반산단에 '**53년까지 136만톤** 이상 필요
 - 용인 국가산단 : '31년부터 하수 재이용수, 팔당댐을 통해 **20만톤** 공급 + '35년부터 화천댐 발전용수를 통해 **60만톤** 추가 공급
 - 용인 일반산단 : 여주보에서 **26.5만톤** 既 확보(∼'27년), 팔당댐에서 **30.8만톤** 확보 중(∼'35년)

□ 국비 지원 현황

-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추진 속도를 감안하여 '23년 용인·평택 **1천억원**, '24년 포항·구미 등 **439억원** 예산 지원

<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현황 >

구 분	예산 지원액	지원 항목
용인·평택	1,000억원	■ 용인·평택 일반산단 변전소·송전선로 (500억원) ■ 용인·평택 일반산단 용수관로 (500억원)
구 미	200억원	■ 구미대교 신축 (200억원)
포 항	154억원	■ 영일만산단 정수장 증설 및 용수관로 (154억원)
울 산	38억원	■ 하이테크밸리 변전소·송전선로 (38억원)
새만금	47억원	■ 용수·폐수 관로 (47억원)
합 계	1,439억원	

□ 공공기관 지원 현황

- 용인 국가산단 기반시설은 공공기관 예타 면제 (10조원 이상 규모)를 통해 한전·수공·LH 등 공공기관이 신속하게 구축

□ 국비 지원기준

-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력·용수·폐수·도로 4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
- 투자 규모와 지역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적용하되, **특화단지별 500억원 한도***로 지원

* 단, 기업 투자액이 他 특화단지에 비해 월등히 많은 용인·평택 특화단지는 용인 일반산단, 용인 국가산단, 평택 일반산단으로 구분하여 각 500억원씩 지원

<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비율 >

구 분	특화단지별 투자 규모			비수도권	수도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上 구간	100조원 이상	30조원 이상	10조원 이상	30%	25%
中 구간	10~100조원	3~30조원	1~10조원	20 → 25%	15 → 20%
下 구간	10조원 미만	3조원 미만	1조원 미만	10 → 20%	5 → 15%

참고 4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주요 내용('24. 6.)

◇ '24. 5월 발표된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확충 방향」 구체화
→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금융·재정·세제·기반시설 지원

① 금융지원

－ 투자자금 : '27년까지 산은에 현금 1조원, 현물 1조원 출자 → 17조원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24.7월부터 가동

* 적용 금리 : (대기업) 최대 1.0%p 우대, (중소·중견기업) 최대 1.5%p 우대

－ 소부장·팹리스 : 現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 3천억원 ('23~'25년 출자) + 신규펀드 8천억원* ('25~'27년 출자) 추가

* 구성 : (재정) 2천억원 + (정책금융) 2천억원 + (민간매칭) 4천억원 = 8천억원

② 세제지원

－ 적용기한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대상 기술 확대*

*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술 추가 검토('24.12월 결정 예정)

－ 적용범위 : SW 구입비 등도 대상에 포함*,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인력**에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적용

* 공제대상 비용 추가 : SW 구입비, 연구시설 임차·이용료, 직무발명보상금, 자문비

** 현재는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인력의 인건비만 적용

－ 감가상각 : R&D용 기계장치 감가상각 기간 단축 (5년 → 3년)

③ 재정지원 : '22년~'24년 3조원 → '25년~'27년 5조원

－ R&D 예타 신속화 : 첨단패키징 선도기술 (5,569억원),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기술 (9,405억원, 과기부), 미니팹 구축 (9,060억원)

- 글로벌 R&D 확대 : 글로벌 첨단 공공 웹과 국내 공공 웹 연계 (425억원, 과기부), 한 - 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확대
- 사업화 지원 :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과기부), 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수요연계 온라인 플랫폼 지원
- 인력양성 : 반도체 특성화대학 (現 18개소) · 대학원 (現 6개소) 및 AI반도체 대학원 (現 3개소) 확대

④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반시설 지원

- 도로 : 국도 45호선 이설 · 확장 예타 면제, 국비 지원
- 용수 : 국가 · 일반산단 통합 용수관로 예타 면제, 수공 비용 분담
- 전력 : LNG 발전 (3GW) 및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 송전선로 비용은 공공 · 민간이 분담하되, 8월말 세부 계획 수립

